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2015. 8.

기획조정실

1. 검토 배경

■ CJ와 VIP 면담으로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에 의미 있는 전환점 도래

- VIP가 8. 6. 대법관 임명제청을 위한 오찬 자리에서,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 표명과 향후 제도 개선 추진 방향 제시

☑ VIP 발언 요지

-상고심 기능 개편 필요하나, 상고법원안은 상고법관 임명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 위헌 시비, 4심제 논란 등 문제점 있음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창조적 대안 창출해 주기 바람

- VIP의 평소 단호하고 직설적인 발언 스타일로 보아, 상고법원안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협상 파트너로 법무부 지목 ⇨ 지금까지 배후 반대세력의 구심적인 법무부와의 협상을 위한 새로운 전기 마련

- 법무부가 VIP의 구체적 지시에 외형상으로라도 순응하는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

- 창조적 대안 마련을 위해 협상 테이블 갖추고 VIP에게 진행 경과 보고해야 할 의무 발생

■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면밀히 분석 ⇨ 하반기 국회 입법 성사를 위한 효과적 전략 수립

- [법무부] VIP 지시 있었더라도, 곧바로 법무부의 진정성 있는 전향적 태도 기대 난망 ⇨ 이를 극복하기 위해, VIP 지시를 동력삼아 지속적·단계적으로 접촉하여, Big Deal 등을 통한 협상타결 추진



- 하반기 정기국회 임박한 상황에서, ①다단계 · 전방위 협상 가동을 통한 속도전 추진 + ② 신속 ·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 다양한 협상 카드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 [국회] 최근 국회 상황 분석을 토대로 하반기 국회 입법추진전략 재점검

- 하반기 국회 주요 일정 및 정치 이벤트 파악 ⇨ 법률안 심사 일정에 미칠 영향 분석
- 특히, 법사위 1소위 통과 타개책의 구체적 실행 방안 수립 ⇨ 법무부 설득과 병행 추진 등 최후의 골든타임 활용 극대화 방안 모색

2. VIP 면담 이후 법무부 현황 및 대응 전략

가. 현황

■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 ⇨ 이중 플레이

- 표면적 ⇨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 But 상고법원안에 대하여는 신중검토 의견

☑ 7. 20. 법사위 1소위에서의 상고법원 법률안에 대한 법무부 차관 의견

“상고제도 개선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법조 직역에서 의견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 실질적 ⇨ 확고한 반대 입장
 - 법원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심리 발동 ⇨ 각종 궤변적 반대 논리 구성 · 유포
 - 최근에는 의원 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형식적인 부분을 트집잡고 있음
 - 기본적으로 타 기관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수수방관적 태도 견지
 - 다만, 대법관 증원론에 대하여는 진보 세력의 최고법원 진출을 우려하는 문제인식 가지고 있음



■ VIP 지시에 따른 태도 변화 예상

- 민정수석이 8. 10.경 법무부장관에게 VIP 지시사항 전달 ⇨ 법무부로서는 VIP 관심사항에 대해 더 이상 기존의 방관적 태도 고수 불가
- 대법원과의 협의진행 경과를 VIP에게 필요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부담
- 지시 후 [대외적·형식적 입장] ⇨ VIP 지시 이행 위해 노력
 - VIP가 창조적인 대안 마련을 지시한 이상 ①대법원과의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고, ②어떠한 형태로든 협상테이블에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외관을 형성할 것임
- 지시 후 [대내적·실질적 입장] ⇨ 여전한 지연 및 회방 전략
 - ①시간이 법무부의 편임을 잘 알고 있음 ⇨ 통치구조 및 국민의 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임을 들어 19대 국회 임기만료시까지 지연전술
 - ②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후 BH·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핑계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협상과 양보의 자세 기대 난망
 - ③실제 협상테이블 마련을 위해 법무부가 먼저 연락할 가능성도 높지 않음

나. [대응 기본 방향] ⇨ **강온 양동 전략** 구사를 통한 **협상 지연 타파**

■ 법무부 지연 전략 극복 대책 필요

-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국면 이용하여 지연 전략 구사 가능성 높음 ⇨ 양 기관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지루한 지구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을 필히 극복하여야 함

■ [압박] VIP 지시사항임을 전면에 내세워 강도 높게 협상 압박

- VIP 지시에 따른 법무부의 책임감과 부담감 심분 활용
- CJ와 VIP 면담 이후 변화된 상고법원 입법추진환경 명확히 인식시켜야 함 ⇨ ① **VIP 구체적 지시 내용 다시 전달하며 협상에 응할 것 주문**, ② **기존의 무조건적 반대 입장 고수는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중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



■ [회유] 상호 타협을 통한 원-원 구도 형성

- VIP의 창조적 대안 마련 지시가 법무부 입장에서 기존 태도에서 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와 명분이 될 수 있는 상황
- 현재의 상고법원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 준비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절충과 양보 가능하다고 설득
- 법무부의 주요 현안 및 요구사항과의 Big Deal을 통한 상생의 길 제시

다. 구체적 협상 카드

1) 상고법원안에 대한 다양한 대안 제시

■ 가장 강한 수정안부터 가장 약한 수정안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대안 준비하여 제시

- 신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법무부 입장에서 가장 만족할 만한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 협상 난항 시 추가적 대안 제시하는 방향으로 협의 진행

■ 협상 가능성 관점에서 현재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부여

- 우선순위 부여를 위한 고려 사항 ⇨ ① 법무부 주요 관심 사항 및 문제 제기 영역, ② 사법부 수용 용이성
- 문제제기 유형에 따라 준비된 대안

분류	문제제기	법무부 관심	수용 용이성	우선 순위
I. 상고법원 인사 관련 사항				
1. 추천위원회	민주적 정당성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 관료화·계층화	상	중	3
2. 법조경력 상향	상고법원 신뢰 확보	중	상	6
3. 시니어 저지 도입	관료화, 전관예우 고위직 자리늘리기 사실심 충실화 역행	하	상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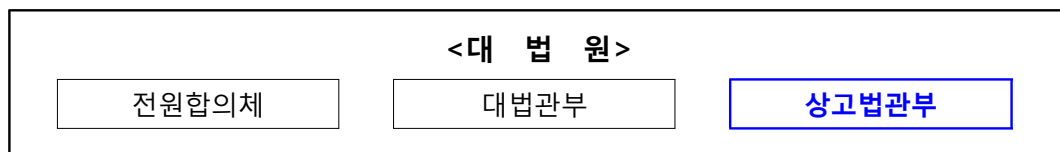


4. 대법관 수 감축	고위직 자리늘리기 전관예우	중	중	
5. 외부 법조경력자 임용	다양화·전문성 강화 관료화·계층화	중	상	5
Ⅱ. 대법원 사건 분류				
1. 필수적 심판 사건 확대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심사기준 자의성, 예측 가능성	상	상	2
2. 사건 심사 기준 보완	중요 사건의 대법원 재 판 보장	상	상	
Ⅲ. 재판 절차				
1. 특별상고 폐지	4심제	상	중	4
2. 특별상고 인지 환급	4심제, 국민 부담	중	중	8
3. 지역 접근성 제고	서울과 지방 차별, 지부 설치	중	중	
Ⅳ. 조직 -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 재판받고 싶은 법감정 별도 법원 설치 부담과 혼란	상	상	1
Ⅴ. 법률 규정상 도입 조치				
1. 한시법 규정	도입 컨센서스 미성숙	하	중	9
2. 결과 보고 의무 규정	설치 효과 불확실	하	중	

■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매개로 협상 추진

● [첫 번째 제시 대안]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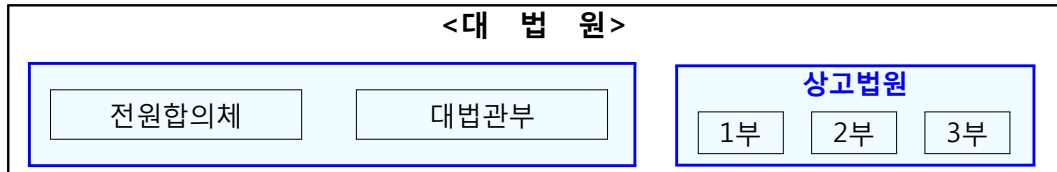
- 1안 ⇨ 대법원 내 별도 재판부로 설치





- 별도의 독립된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재판부로 구성

- 2안 ⇨ 대법원 내 독립된 재판조직으로서의 상고법원 설치



- 상고관사로만 이루어진 재판부를 묶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

ㄹ 독립된 법원 신설은 대응하는 검찰청 신설 문제로 직결되나, 대법원 내 재판조직으로 설계하면, 법무부 제2차관(송무차관)직 신설하여 법무부 조직과 기능 확대할 수 있는 여지 발생

- 법무부 제2차관(송무차관)직 신설하면, 그 산하에 국가송무국, 국제법무조약국 등 검사장급 보임 가능한 2개 이상의 국 설치

☑ 미국의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제도 참조

- ▶ 1870년 Judiciary Act에 의해 설치
- ▶ ①정부가 패소한 모든 사건 검토하고 상소 여부 결정, ②어떤 사건을 대법원이 심사할 것인지 의견제출, ③대법원의 모든 사건에서 미국연방을 대표
- ▶ 산하에 4명의 부차관(Deputy)과 20여명의 차관보(Assistant solicitor) 두고 있음
- ▶ 평판 높은 전문지식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상당한 신뢰받고 있음

- 상고검찰청 신설과 함께 추진 시, 최소 5명의 검사장 자리 중설 가능

- [기능①] 신설된 송무차관 조직에서 참고인 의견서 제출(Amicus curiae) 업무 적극 수행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에서 국가 의견 및 공익 대변

ㄹ [기능②] 상고법원안에 따른 대법원의 사건분류심사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사건분류 의견 개진

● [두 번째 제시 대안] 대법원 심판 사건 확대

- ①형식적 기준에 의한 형사사건 추가 ⇨ ①10년 이상 징역·금고형 선고 사건, ②1심 합의 형사사건 등



- ②실질적 내용에 따른 형사사건 추가 ⇨ ①주요 공직자 수뢰 등 사건, ② 국가 안전보장 관련 사건, ③ 시국·공안 사건 등
- ③기타 법무부가 원하는 특정 유형 사건을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추가 가능
- ④대법관이 담당하는 사건 분류 절차에서 법무부가 참고인 의견서 제출 (Amicus curiae) 제도를 통해 대법원 심판사건으로 정해 달라는 의견 개선 시, 최대한 존중

● [세 번째 제시 대안]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준하는 상고법원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

-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력 행사하는 민정수석의 가장 큰 문제제기 사항
- ①상고법원 판사 임명에 VIP 의사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하여 제시
 - 추천위원회 구성에 VIP 영향력 최대한 보장 ⇨ 1안부터 4안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카드 제시

	대법관추천(10명)	1안(9명)	2안(9명)	3안(10명)	4안(9명)
당연직	선임대법관				상고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회장
비당연직	법학교수회장	대통령 지명 3	대통령 지명 2	대통령 지명 2	대통령 지명 1
	법전문협회의이사장		법학교수회장	국회 추천 2	국회 추천 2
	법관 1		법전문협회의이사장		
	학식, 덕망 3	학식, 덕망 3	학식, 덕망 2	학식, 덕망 3	학식, 덕망 2
종합	행정 1, 사법 3 교수 2 재야 1, 일반 3	행정 4, 사법 1 재야 1, 일반 3	행정 3, 사법 1 교수 2 재야 1, 일반 2	행정 3, 사법 1 입법 2 재야 1, 일반 3	행정 2, 사법 2 입법 2 재야 1, 일반 2

- 추천위원회 심의기구화 + 추천위원회 추천 의결에 기속력 인정



- [2]다만, ①현행 헌법하에서 대법관 아닌 상고법원 판사에 대하여 [국회 동의와 VIP 임명] 과 같은 수준의 임명절차 마련은 불가능하고, ②상고법원 판사는 간단한 개인적 분쟁을 처리하는 3번째 심급 담당 법관일뿐, 실질적인 최고법원의 법관 아니라고 설득

2) 그 외 법무부가 관심 가질 만한 Big Deal 카드 제시

■ 사법부 수용 가능한 방안

- [1]영장제도 관련 ⇨ 통제 강화 시, 압박 카드될 수도 있음

[1]체포·구속영장제도 개선 ⇨ '피의자 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新인신구속시스템 구축'

- [체포] 영장 없는 체포 활성화 및 체포 전치주의 도입
- [구속 심사] 체포 후 계속 신병확보 필요성 등 심사
- [구속 심사 후] 기소 전 보석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 도입

[2]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정비 및 증거능력 인정 확대 방안

- 최근 원세훈 판결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원합의체 판결로 검찰의 위기감 극대화
- 전자정보에 대한 효율적 압수수색절차 마련 ⇨ 압수수색절차 보완과 함께 연결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전향적 검토 ⇨ 단 일정한 한계 있음
- 증거의 성립진정 인정에 관한 특례 인정 ⇨ '反테러법'과 같은 공안사건에 특별 적용하는 입법에 대하여 협조 여지

- [2]법무부·검찰 조직 및 기능 확대 관련

[1]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검사 보임 ⇨ 형사공동조 등에 투입

[2] 법무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교차 파견

[3] 공안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방안

[4] 특성화법원 설치 방안 ⇨ 현재 이른바 '중점 검찰청' 기소 사건 중 관할 모호한 상당수의 사건 관할위반으로 이송함으로써 강력한 압박카드로도 활용 가능)

- [3]법무부·검찰이 추진하는 형사 정책 관련

[1] 형사사법통계시스템 도입

- 법무부가 적극 추진 중인 4대 기관(법원, 검찰, 경찰, 해양경찰) 통합 형사사법시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

- 현재 소극적으로만 대응 중이나, 이미 검찰에 형사사법통계시스템 구축되어 있는 상황 고려하여, 일정 영역(예컨대, 확정된 선고내역 제공 등)에서 시스템 구축 성과 나타낼 수 있도록 입장 선회

[2] 보호수용제 도입

- 특정 흉악범죄에 국한하여 제도 도입 목인
- 어차피 야당, 학계 등의 반대로 입법 통과 쉽지 않을 것

■ 전략적으로 협조 외관 취할 수 있으나, 추가적 내부 검토 필요한 카드

[1] 플리바게닝 도입 방안 ⇨ 법원이 묵인해도 당분간 입법 통과 어려움

[2]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방안 ⇨ 법원의 구인영장 전제

[3]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 방안

[4] 사법방해죄 신설 방안

라. 구체적 협상 추진 전략

1) [각론 전략 ①] BH 내부 중재자를 활용한 협상 진행 ⇨ VIP에게 협상 진행 상황 용이하게 보고할 수 있는 창구 확보

■ BH 내부 중재자 필요성

- [실질적 필요성] ⇨ ①중재자 없이는 지연 전술 극복 어려워 결론 도출 사실상 불가 ②입법 일정의 제약상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물 도출 필요, ③ BH 내부 중재자를 통해 법무부에 대한 압박 효과 기대

- [명분상 필요성] ⇨ 상고제도 개선의 국가적 중요성, VIP 지시의 무게감 및 결과도출 필요성,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첨예한 입장차 등을 고려할 때 중량급 중재자가 필요함

- ⇨ 양 기관을 중재·조율하여 합의안 도출을 유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

■ 적합한 중재자 ⇨ **이명재 민정특보**

- 사실상 특보단장의 지위에 있고, VIP 신임 두터움 ⇨ 민정특보의 중재안에 대하여 VIP 수용가능성 상당함



- 존경받는 검찰 대선배이자 동향(경북 영주) 선배로서 민정수석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 가능
- 국가원로로서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지위에 있고, 균형잡힌 시각과 책임감 있음 ⇨ 검찰중심적 사고 약하고, 합리적 설득 가능

☑ 이명재 특보 설득 가능성

- ▶ [인적 사항] 19○○년생, ○○고, 서울대 법학과, 연수원 1기, 검찰총장
 - ▶ [성향 등]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 전형적인 경청형 인물, 로펌 고문직 자진사임 등 헌신적 자세, 법조 현안 관련 민정수석과 역할 분담하고 있는 지위
 - ▶ [설득방향] 국가 원로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도록
 - 상고허가제가 어려운 우리나라 환경에서, 상고사건 처리 지연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노력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 부각
- ⇨ 대법원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 설득이 관건

2) [각론 전략 ②] 효과적인 협상 프레임 구축 + 이원적 협상 라인에 따른 단계별 협상 추진

■ 협상 Framing

● 격식화된 협상 진행

- [장소] 대법원과 법무부 청사 등 사무적 장소에서 홈앤어웨이 방식의 상호 교차 협상 추진
- [방식]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진행, 오만찬과 겸하는 형태 지양

● 협상의 데드라인 설정

- 최종 시한 및 대략적인 협상 횟수를 사전에 결정하고, 데드라인까지 협상 마무리하기 위해 전력 투구
 - 예컨대, 8월 말 협상 개시하는 경우, 1달의 협상 시한으로 9월 말까지 협상 완료하고, 그 사이 1주에 1차례씩 4번 회의 개최
- 데드라인에 대한 인식으로 막판 양보의 타이밍 확보

■ 1단계 착수 ⇨ 실무협의



- [카운터파트너] 법원행정처 차장, 기조실장(정책실장) —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 [협의방향] 그간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법무부 반대 논리 외에 비공식 접촉과정에서의 추가 경청을 통해 법무부의 진정한 인식 및 needs 정확한 파악 ⇨ 인식공유 통해 협상 여지 확인하고 점점 모색
- [유의사항] ①1단계 협의부터 법무부가 진지한 협상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VIP 지시사항을 매개로 한 민정특보의 '성의있는 협상태도 촉구' 필요 ②법무부 반응에 따라 1단계 협의를 상당 부분 생략하고 신속히 2단계 협의에 집중할 필요 ⇨ 지루한 지구적 양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유의 (협상 경과 상시 모니터링 진요)

■ 2단계 ⇨ 대안제시를 통한 수뇌부간 본격 논의

- [카운터파트너] 법원행정처장 — 법무부장관 라인을 중심으로 함
- [협의방향] 1단계 협의에서 파악된 ①문제제기 유형별로 대안을 취사선택하여 제시하고,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대안제시만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②법무부에 대한 압박·회유 카드를 활용한 빅딜을 통해 법무부 동의 유도

■ 3단계 ⇨ 최종결론 도출 및 입법 추진

- 법원이 최종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민정특보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형태 ⇨ 법무부 및 민정수석의 반발 완화 + VIP 설득 유리
- 최종안 마련시 ⇨ VIP 승인을 거쳐 법무부를 통한 정부입법안으로 신속히 국회 제출
- ①검찰 출신 국회의원 반대 무마는 법무부 담당 + ②여당 의원은 청와대 중재안에 따르도록 유도 + ③야당 등 나머지 의원 설득은 사법부 담당

3) [각론 전략 ③] 주요 언론 활용한 협상 압박 분위기 조성

■ 언론 활용 필요성



- 언론을 통해 상고제도 개선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입법 지연에 따른 법무부 책임론 부각
- 언론에 의해 형성된 여론이 BH에게 유입되어 VIP 관심 환기시키는 부차적 효과도 기대
- ⇨ 법무부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기폭제 될 수 있음

■ 구체적 추진 방안

- [언론매체 선별] 법무부에 실질적 영향 미치고, BH 인식 환기시킬 수 있는 메이저 언론사 활용 ⇨ 조선일보 1면 기사 등
- 언론기사의 전체적 방향
 - 상고법원 제도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상고법원 개요 소개하는 수준에서 탈피
 - 상고제도 개선을 VIP도 관심 기울이는 주요 국가 현안으로 부상시켜 강조
 - 이미 언론에 노출된 CJ와 VIP간 면담 경과 및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도 검토 가능

☑ 뉴시스 8. 12.자 「양○○ 대법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단독 오찬」 기사

「양○○ 대법원장이 지난 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양 대법원장이 지난 오찬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 문제(상고법원)를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기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입법추진경과 및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여, 법무부의 반대로 인해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소개
- [언론 활용 방안] ①기고문이나 사설 게재 방식에 더하여, ②대국민 설문조사 실시하여 결과 공표, ③중량급 법조인 등 참여하는 지상 좌담회 개최 등 함께 검토
- [추진 시기]
 - 18월 중으로 기고문이나 사설 등 통해 변화된 입법추진환경(올해 내 상고



제도 개선 기정사실화, BH의 관심 표명 등) 소개 ⇨ 법무부를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데 활용

- [2]9월 중 대국민 설문조사, 지상 좌담회 추진 ⇨ 법무부와의 원활한 협상 진행 매개로 활용

3. 국회 현황 및 대응 전략

가. 현황

1) 8월 임시국회 현황

■ 법사위 법률안 심사 가능성 희박

☑ 8월 임시국회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

▶ 진행 경과

- [회기] 8. 7. ~ 8. 31.
- [본회의] 8. 11./8. 13.(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 [법사위 전체회의] 8. 11.(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심사)

▶ 향후 일정

- [예결위 결산심사] 8. 18. ~ 8. 28.
- [본회의] 8. 28. 10:00

- 국정감사 및 내년 총선 준비 등으로 인해 법사위 1소위 개의 어려울 것으로 예측

ㄹ 법사위원장, 법사위원 8명과 함께 예정되어 있던 8. 20.부터 8. 27.까지 북유럽 출국 일정 취소하고, 법률안 심사 전체회의, 1소위 개의 주장하였으나, 대부분 법사위원들 이에 대하여 미온적 반응

- 대다수 의원들은 벌써부터 지역구에 머물며 내년 총선 준비에 돌입

■ 8. 18.부터 개시될 예결위 결산심사 외에는 사실상 8월 임시국회 활동 없을 것으로 보임

- 여야, 국회 일정 합의과정에서 힘겨루기로 팽팽한 기싸움
- [새누리당] 야당의 국회 운영에 대한 비협조 비난



- [새정치민주연합] 더 이상 여당이 정국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는 강경 분위기

2) 하반기 국회 원활한 운영도 불투명

■ 야당의 여당에 대한 공세 분위기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야당 내에서는 상반기 정국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에게 끌려 다녔다는 문제인식 팽배
 - 5월부터 7월까지 3번의 여야 합의사항을 야당은 100% 이행하였으나, 여당은 아무것도 지킨 것이 없다는 인식
- ‘박기춘 정국’ 마무리하면서, 대야 공세 강화할 수 있는 명분 확보
 -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협조에 여당이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압박
 - 구체적으로, ①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보장, ②국정원 해킹 관련 긴급현안질문 및 국정조사, ③성완중 리스트 특검, ④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국회 설치 등을 여당에 요청
- 이러한 요청 사항에 대한 여당의 화답이 없을 시,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도 있다는 강경한 입장
 - 그러나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요청 사항들에 여당이 순순히 응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난맥상 있음

■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 변경

[국정감사] 당초 잠정안 9. 4. ~ 9. 23.에서 **9. 10. ~ 10. 8.로 변경** (1차: 9. 10. ~ 9. 23, 2차: 10. 1. ~ 10. 8.)

[예산안 심사] ①상임위 예비심사 10. 12., 10. 19.~10. 26., ②예결특위 종합심사 10. 28.부터 개시

[법률안 심사] 10. 28.부터 개시

- [변경 요인] 정기국회 일정 협의 지연 ⇨ 8. 20.에 이르러서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 도출
- [부정적 파장] 예산 및 법률안 심사 일정 동반 연기



- 10월 초까지 국정감사 진행 후, 10월 중순부터 예산안 심사 돌입
- 10월 말부터는 예산 심사와 법률안 심사 동시 진행 ⇨ But, 예산안 심사에 보다 집중 예상
- ⇨ 10월, 11월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 로드맵에 대한 중대·심각한 변수 발생

■ 하반기 국회에서 충실한 법률안 심사 장담할 수 없는 상황

- 19대 총선 직전 연도인 2011년 국회 상황 답습할 것으로 만연히 기대할 수 없음

☑ 2011년 하반기 국회 법률안 심사 일정 개요

① 정기국회

- [회기] 9. 1. ~ 12. 9.
- [국정감사] 9. 19. ~ 10. 8.
- [예산심사] 11. 2. ~ 12. 5.
- [법사위 법률안 심사] 10. 24. ~ 11. 15. (1소위 및 전체회의 각 3차례 개의)

② 12월 임시국회

- [회기] 12. 10. ~ 12. 31.
- [예산심사] 12. 20. ~ 12. 31.
- [법사위 법률안 심사] 12. 28. ~ 12. 31. (1소위 1차례, 전체회의 4차례 개의)

- [우려 요인 ①] 12. 2.까지 마쳐야 하는 예산심사 일정
 - 내년 총선을 겨냥한 의원들의 예산 활동은 치열할 것 ⇨ 12. 2.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기 위해, 10월 중 국정감사 종료 후 예산심사 개시하여 11월 내내 예산심사에 몰입할 가능성 높음
 - 12월 말까지 예산심사를 위해 정기국회에 이어 임시국회 활동 이어가던 종전과 달리, 12월 임시국회 개의 동력 상실될 수 있음
- [우려 요인 ②] 내년 총선 후보경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 도입 가능성
 - 당원 외 지역구 주민들까지 경선 투표권 가지게 됨에 따라, 의원들이 지역구 분위기에 촉각 기울이며 지역구 행보에 상당한 역량 투입할 것으로 예상 ⇨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의정 활동의 최대 장애 요인될 수 있음



● [우려 요인 ③] 새정치민주연합의 分黨으로 인한 정국 소용돌이 가능성

- 국정감사 종료 후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체 및 야권 재편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 제기

- 친노, 비노간 계파 갈등 지속
- 호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세 하락 분위기 심각
- 최근 이종걸 원내대표의 심상치 않은 행보

☑ 원내대표 취임 100일(8. 14. 기준) 맞은 이종걸 원내대표 최근 활동에 대한 평가

- ▶ 원내대표직보다 '비주류 수장' 이미지 부각 ⇨ 당내 비주류 대변해 **문재인 대표와 대립각**
 - 박기춘 체포동의안 처리 강행하려는 문재인 대표에 맞서 사실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력 주장
- ▶ '경제민주화 시즌 2'를 전면내세우며 정치적 위상 강화
- ▶ 민변 출신 의원 주변에 포진시키고, '비노 개혁파' 자처
 - 정책위의장에 최재천 의원, 민생본부장에 정성호 의원 각 임명

- 야당의 분열은 내년 총선 공천 등을 염두에 둔 계파간 혼탁한 이합집산으로 이어져, 원내 의정활동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

■ 한명숙 의원 대법원 판결 선고에 대한 야당의 반발

● 8. 20.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 선고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개요

- ▶ [쟁점] 한명숙에게 정치자금 제공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가, 제1심 법정에서 진술 번복한 **증인(한○○) 진술의 신빙성**
- ▶ [결론] 9억 여 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중 ①1차 정치자금 3억 원 부분은 대법관 전원 일치로 유죄, ②2차 및 3차 정치자금 6억여 원 부분 다수의견 8명, 소수의견으로 나뉘어 유죄 인정 ⇨ **상고기각판결 선고(원심 징역 2년 형 확정)**

● 판결 선고 직후, 야당 의원들의 공식·비공식 항의 잇따르는 분위기

☑ 문재인 대표, 판결 선고 직후 기자 인터뷰 내용

“정말 참담한 심정이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전해철 법사위 여당 간사, 대법원 선고기일 지정에 불만 표시

“대법원이 여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눈치를 살피며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급하게 선고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런식이라면 야당은 앞으로 대법원의 중요 정책에 협조해 주기 어렵다.”

- 판결 결과뿐만 아니라, 상고법원 입법추진 등을 위해 BH·여당의 요구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고기일 지정하였다는 형식적·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까지 문제 제기
- 8. 18. 야당 중진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발부와 맞물려, 야당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는 정치적 공략 프레임 구축하여 당분간 사법부에 대한 공세 이어갈 분위기
- ⇨ 상고법원 입법 추진에 미칠 파장 예의주시 필요

나. 대응 전략

▣ 하반기 국회에서 상고법원안 심사 일정 확보를 위한 물밑 작업 긴요

- 국정감사 연기 등 현실화될 경우, 법률안 심사 일정 매우 불투명 ⇨ 상고법원안에 대한 법사위 내부의 강력한 입법추진동력 없이는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개시 장담할 수 없음
- [극복 방안①] 법률안 심사 드라이브 걸겠다는 법사위원장 의지와 역량 적극 활용
 - 19대 국회 하반기 법사위에서의 법률안 심사 실적 매우 저조 ⇨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부담감 자극 요인
 - 적어도 주요 법률안에 대해서는 집중 심사 등을 통해 연내 통과시키는 구체적인 응급 처방 요청
 - 특히, 법사위원장의 관심 법안인 특허사건 관할 집중 법안에 대해 BH가 긍정적 반응 보이면서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진 상황 이용 ⇨ 법원의 적극 찬성 및 지지 입장 어필하면서, 상고법원 법률안과 패키지로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 개시해 줄 것 요청
- [극복방안②] 상고법원안 처리 주도하는 역할 자임해 줄 수 있는 의



원 발굴하여 설득

- 법사위원장과 함께 상고법원안 처리를 리드해 줄 중량급 의원 필요 ⇨ ∵ 법사위원장 혼자서는 역부족일 수 있고, 자칫 법사위원장 관심 법률안 등 극소수 법률안만 처리될 가능성도 있음
- 여당의 홍일표, 이병석 의원, 야당의 이춘석, 우윤근 의원 등 접촉·설득
⇨ 하반기 국회에서 상고법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법률안 심사 추진에 적극 나서 줄 것 요청

▣ 지지부진한 법사위 1소위 대체하는 대안 조기 추진

- 법사위 1소위 논의 개시되더라도, 現 1소위 구도 속에서 상고법원 법률안 가결 기대는 요원
 - [문제상황 ①] 상고법원안에 반대하는 의원 1소위 대거 포진 ⇨ 김진태, 김도읍, 이한성, 서기호 등
 - [문제상황 ②] 이한성 1소위 위원장의 법률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 논의 주도권 행사 등 역량 부족 ⇨ 소극적·수세적·비효율적 회의 진행 + 임기응변과 중재능력 부족
- 하반기 국회에서 충분한 법률안 심사 일정 확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긴급 상황을 극복하는 非常의 타개 방안 필요
- [타개책 ①] 국회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법안심사 특위 구성 ⇨ ① 여야 각 2인, 영향력 있는 중진급 의원 중 상고법원안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의원들로 1소위를 대체하는 특위 구성, ②특위에서의 밀도 있는 집중 심사를 통해 법률안 통과
- [타개책 ②] 상고법원안을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처리 ⇨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전체회의 부의

☑ 의사일정 변경 전례

▶ 2005. 6. 29. 제17대 254회 임시회 전체회의에서, 노회찬 의원 외 1인 찬성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상정 ⇨ 2소위 계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



▶[표결 결과]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당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으나, 결론 못 내리고 계속 심사

● 타개책 실행을 위한 정지 작업 착수

- 법무부 협상과 별도로, 법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1소위 타개 대안의 실행 가능성 타진 필요
- 법무부와의 협상 실패할 경우, 마지막 돌파구 ⇨ 9월 정기국회 개시 이전에 법사위원장, 홍일표 의원 등 우호적 법사위원들과의 사전 교감 반드시 필요

■ 다양한 대안에 대한 사전 정책 결정 ⇨ 즉시 활용 준비 완료

- 법사위원별 관심 및 문제제기 사항에 대한 대안 종합 분석 ⇨ 법사위에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의 최종적 형태 결정
- 법사위원별 문제제기 유형에 따른 대안 분류

분류	문제제기	의원
I. 상고법원 인사 관련 사항		
1. 추천위원회	민주적 정당성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 관료화·계층화	홍일표, 이병석, 임내현, 김진태, 서영교, 서기호
2. 법조경력 상향	상고법원 신뢰 확보	서영교
3. 시니어 저지 도입	관료화, 전관예우 고위직 자리늘리기 사실심 충실화 역행	김도읍, 노철래, 이상민, 전해철, 이춘석, 서영교, 박지원, 서기호
4. 대법관 수 감축	고위직 자리늘리기 전관예우	없음 (이○○, 서○○ 교수)
5. 외부 법조경력자 임용	다양화·전문성 강화 관료화·계층화	홍일표, 김진태, 임내현, 서영교, 박지원
II. 대법원 사건 분류		
1. 필수적 심판 사건 확대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심사기준 자의성, 예측가능성	정갑윤, 임내현
2. 사건 심사 기준 보완	중요 사건의 대법원 재판 보장	이한성
III. 재판 절차		



1. 특별상고 폐지	4심제	이병석, 노철래, 김도읍, 서기호
2. 특별상고 인지 환급	4심제, 국민 부담	이병석
3. 지역 접근성 제고	서울과 지방 차별, 지부 설치	김도읍
IV. 조직 -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대법원 재판받고 싶은 법감정 별도 법원 설치 부담과 혼란	우윤근, 이춘석, 임내현
V. 법률 규정상 도입 조치		
1. 한시법 규정	도입 컨센서스 미성숙	이상민
2. 결과 보고 의무 규정	설치 효과 불확실	이상민

- 하반기 국회 법률안 심사 진척 상황에 따라 대안 제시 ⇨ 일괄 제시 VS 순차 제시 등 미시적 방법론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토 필요
 - [일괄 제시 방안] (+) 지적된 모든 문제 영역에 대한 해결 방안 일거에 제시하면서 법원의 진정성 갖춘 노력 어필할 수 있음, (-) 반면, 여러 대안의 중첩적 채택으로 원안에서 지나치게 후퇴한 결과물 도출될 수 있음
 - [순차 제시 방안] (+) 법률안 논의 상황에 조응한 대중적 대안 제시로 원안의 변형 최소화시킬 수 있음, (-) 반면, 문제제기 유형이 1~2개로 집중되지 않고 나열되어 부각될 경우, 대안별로 정교하게 우선순위 부여해야 하고 법안 심사 지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 하반기 국회 상고법원안 심사 일정 3회 이내로 예상한다면, 모든 정책 결정된 대안 일거 제시하는 것이 조속한 법안 통과에 기여할 가능성 있음

■ 한명숙 의원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적극적 해명

- 2013. 9. 30. 대법원에 사건 접수된 후, 약 1년 11개월 만에 선고 ⇨ 오히려 여당이나 보수 언론 등으로부터 선고가 늦어진다고 비판을 받아온 사건이라는 점 부각시켜 설명
 - 이 사건은 2014년 초부터 여당 등에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요구했던 사건임 ⇨ 만약, 여당의 눈치를 살폈다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안에서 사건 접수 수개월 이내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을 것임



- 최근에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전원 평의를 거쳤고 이를 통해 판결 선고가 성숙한 단계에 이름 ⇨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까지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해 온 사건 ⇨ 전격적인 선고기일 지정이라는 주장은 억측에 지나지 않다고 설득